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03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김상욱·강대식·이인선

진종오 · 김용태 · 김선교

박준태 • 박덕흠 • 강승규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 한 부실한 시설 설치·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지역자 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폐기 물을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폐기물: 폐기물을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지역자원시설세	10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사. 폐기물: 폐기물을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때		
<u>사.</u> (생 략)	<u>아.</u> (현행 사목과 같음)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